

COVID-19

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공중 보건국 입장 시 증상 점검

입장할 때 실시하는 증상 선별 검사는 COVID-19 확산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. Cal/OSHA 규정에 따라 의료 시설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증상 검사를 하도록 요구합니다. 또한 캘리포니아 주 공중 보건국(CDPH)은 의료 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에게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([AFL 20-38.7](#)). 본 문서는 입장할 때 증상 선별 검사를 수행하는 시설에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. COVID-19를 예방하기 위한 기타 모범 사례는 [사업체 및 고용주를 위한 지침](#)을 참고해 주십시오.

Cal/OSHA [COVID-19 예방 비상 대응 임시 표준](#) (ETS)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을 대상으로 COVID-19 증상을 검사하는 절차를 개발 및 시행해야 합니다.

입장 시, 증상 검사 선택권은 다음과 같습니다:

- 사업장에 입장하기 전에 자택에서 자가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기
- 직장 입구에 유증상자 및/또는 COVID-19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에게 사업장의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 사용
- 현장에서 대면 선별 증상 검사의 시행¹

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:

- 발열 또는 COVID-19 증상이 있는 경우²
- 현재 보건 담당관의 고립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
- [Cal/OSHA](#)에 따라 직장에 출근해서는 안 되는 접촉자인 경우

참고: 의료 시설 입장 요구 사항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시설은 관련 CDPH 시설의 대상 공문 게시판(AFL)을 참고해야 합니다.

¹ Cal-OSHA ETS에 따르면, 사업장이 실내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, 검사원과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 비접촉 온도계를 사용해야 합니다. 참고: 입장 지점에서 실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.

² COVID-19 증상에는 발열이나 오한, 기침, 숨 가쁨이나 호흡곤란, 피로감, 근육통이나 몸살, 두통, 인후염, 구역질이나 구토, 설사, 코막힘이나 콧물, 이전에 없던 미각 또는 후각의 상실 등이 있습니다.